

2007. 10. 25.(목)

제139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 제천시 금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제천시 금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0. 16. 제천시장
- 나. 회 부 일 자 : 2007. 10. 16.
- 다. 상 정 일 자 : 2007. 10. 22.(제1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가. 제안사유

○ 암 등 만성퇴행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관련 근로기준법과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금연사업을 수행해 오던 일용직 금연상담사 채용이 불투명짐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 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함.

나. 제안사유

- 사 업 명 : 제천시 금연사업
- 추진부서 : 제천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 인 력
 - 금연 클리닉 상담사 3인
 - 선발 흡연예방과 금연사업 경력자로 희망자 우선 채용
- 예산규모 : 150백만원
- 위탁내용
 - 지역사회 진단
 - 금연상담사의 흡연자 등록관리
 - 금연사업 서비스 제공

- 금연환경 기반구축, 개인단위 금연지원, 예방홍보 프로그램 등
기타 금연사업 향상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사업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후 선정

3. 검토의견

○ 시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라는 내용 중 제16호에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흡연을 저하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 그간 본 사업의 적극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금연상담 전문인력인 금연상담사 3명을 채용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비정규직 관련 근로자법에 의하여 상담사를 계속추진하는 것이 불투명한 등 전문적인 인력 확보의 곤란성이 제기 되어

○ 제천학사 식당 민간위탁업무와 같은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제3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제4조 내지 6조의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의 선정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려 하는 것으로

○ 금연지도자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애로점을 해소하고 아웃소싱을 통한 금연운동 실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 기타 금연사업 민간위탁 계획안에 명시된 추진 방향과 그간 추진성과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수탁자 선정기준에 맞는 기관이 제천에 있는지요? (박성하 의원)

- 예, 세명대학교가 해당 될 것 같으며 참여의사도 있습니다.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 민간위탁이 되면 직영할때 보다 효과가 떨어질 우려는 없는지요?

(박기석 의원)

- 일용직 문제도 해결 되겠지만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통하여 한층 질 높은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판단 합니다.(건강증진팀장 박혜숙)

5. 소수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금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부. 끝.